

제 호

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

- 기 관 명:
- 대 표 자:
- 소 재 지:
-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

「철도안전법」 제44조의3제3항 및 「위험물철도운송규칙」 제28조제5항
에 따라 위 기관을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